

재산등록 현황 보고서(분기)

기관명	작성기준일
-----	-------

1. 재산등록의무자 및 등록현황

구분	의무자				등록자				미등록자				미등록 현황				
	전 분 기	이번 분기			전 분 기	이번 분기			전 분 기	이번 분기			계	법정 신고 기간 미도 래	법정 신고 기간 초과	기간 연장	신고 유예
		계	공 무 원	유관		계	공 무 원	유관		계	공 무 원	유관					
합계	00 (00)	00 (00)															
대법관등																	
법원행정 처장																	
법원장등																	
고등법원 부장판사																	
지방법원 부장판사																	
고등법원 판사																	
판사																	
정무직																	
1급 및 상당																	
2급 및 상당																	
...																	

기재요령

- 법정신고 기간은 등록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임
- 재산공개 대상자는 ()안에 함께 기재함
- 의무면제자, 퇴직자, 신고면제자 등은 제외함

2. 재산등록의무자 증감 내용

구분	계	증가 사항(+)				감소 사항(-)				
		신규 등록자	재등록자	전입자	기타	의무 면제자	퇴직자	전출자	신고 면제자	기타
등록 의무자	00 (00)									

기재요령

- 전분기 대비 이번 분기 증감사항을 기재함
- 재등록자는 전보·강임·강등 또는 퇴직 등에 의하여 3년(퇴직한 경우에는 1년) 이내 다시 등록의무자로 된 사람임(「공직자윤리법」 제5조제1항)
- 전입자 및 전출자는 기존의 등록기관을 유지하면서 고용휴직, 파견으로 근무 중인 사람임
- 의무면제자는 전보·강임·강등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임(「공직자윤리법」 제5조제1항)
- 신고면제자는 사망, 구금, 실종 등의 사유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신고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임(「공직자윤리법」 제6조 3제2항)
- 기타는 공개대상자 신분에 변동이 있는 사람임
- 재산공개대상자는 ()안에 함께 기재함
- 재산등록의무자 변동내용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작성

< 재산 등록 의무자 변동 내용 >

연번	소속	직위 (직급 등)	성명	신분변동 사유	신분변동 발생일	등록 (이관일)	비고

기재요령

※ 신분변동 사유란에는 신규등록자, 재등록자, 등록서류이관자(전입, 전출), 의무면제자, 퇴직자, 사망자, 공개자의 신분변동 내역을 기재함

3.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자 현황

구분	계	유예 연수별			유예 사유별				비고
		1년	2년	3년	재외공관, 해외주재 사무소 근무	외국 파견	휴직	기타	
총 유예자수									
전 분기 유예자수									
이번 분기 유예자 수	증가								
	감소								

※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자 내역을 다음 서식에 따라 작성

<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자 변동 내용 >

연번	구분	소속	직위 (직급 등)	성명	유예 사유	발생일	종료일	유예년도		비고
								년부터	년까지	

기재요령

1. '구분'란에는 유예자의 "증가" 또는 "감소"로 기재
2. 발생일 및 종료일 란에는 인사발령일을 기재
3. '유예년도'란에는 정기변동신고 및 의무면제자신고의 유예를 받는 연도를 기재
4. '비고'란에는 '정기변동' 또는 '의무면제'로 구분하여 기재

4. 정기변동사항 신고현황

구분 직급 등	의무자	신고자	미신고자 현황							비고
			계	기간 연장자	신고 유예자	신고 면제자	10월~12월 중 임용자	1~2월 중 퇴직자	기타	
	00									
계	(00)									
	<00>									

기재요령

1. 정기변동사항 신고는 전년도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매년 2월 말까지 하는 신고로서 3월 중 재산등록현황 보고 시에만 작성함(「공직자윤리법」 제6조제1항)
2. 의무자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재하며, 의무자의 신고현황은 해당연도 3월 31일 기준으로 기재함
3. 10월~12월 중 임용자와 1~2월 중 퇴직자는 「공직자윤리법」 제6조제3항에 따라 정기변동사항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임
4. 기타는 신고유예기간 종료 이후 신고기간이 미도래한 사람 등임
5. 미신고자 현황 명단을 별도로 붙임
6. 재산공개대상자는 () 안에, 임기제공무원은 < > 안에 함께 기재함